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는 돈이라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건강이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일 것이다. 건강해야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퇴색해지면 의욕도 줄어든다.

짜증도 나고 싫증도 느낀다. 결국 건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보다도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권력, 경제력 등을 모두 확보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허사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오로지 출세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위해서라면 애정 없는 섹스는 물론 자신의 장기까지 매매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의 풍속도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나쁘게 말하면 미친 세상이

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아닌데, 이른바 성공이라는 과실을 얻는 경우는 드물다.

획득한 경우에도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이다. 마음을 삭막한 폐허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삶이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관차에서 하차해야 한다.

내리지는 않더라도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어가는 바깥 경치에 빠져볼 필요는 있다. 인생은 다시 오지 않는다. 때문에 매 순간이 소중하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 쉽지가 않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영원 속의 한 점인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다.

왜 그랬을까.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1849년 12월, 엄청나게 몰아치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러시아 세메노프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 집행관은 그에게 마지막 5분을 주었다. 그 5분도 점점 흘러 마지막 1분만 남았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최후의 1분도 지나갈 무렵, 그때 황제의 명을 받은 전령사가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왔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라면서 결국 황제의 명으로 살아난 이 젊은이는 4년간 시베리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사지에서 돌아오면서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이다.

쉽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결코 헛되어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때로 시간의 자부성을 느낄 때가 있다. 헛되어 보낼 때도 있다.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말이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이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서글픈 일이다.

때문에 현재를 즐겨야 한다. 그 즐거움의 시간들을 더해갔을 때 한 인간의 아름다운 역사를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연조 깊은 분들마저도 추잡한 욕망에 그득 찬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에는 정치인도, 학자도, 종교인도, 연예인도, 돈 많은 부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미친 세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세상에서 감지자질을, 때로는 난폭운전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죽음뿐이다.

죽음이 아닌 인생을 관조하면서 이런 병리적 현상들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분명히 있다. 그것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욕을 버려야 할 것이다. 과욕을 말이다.

社說

‘퇴직자 접촉 제한’의 함정

직무 관련성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사적 접촉을 제한한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공직 사회의 평가가 엇갈린다.

부정부패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순수한 친목 모임까지 사전 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적 접촉 제한이라는 게 골프나 사행성 오락, 여행, 직무 관련자가 제공하는 향응을 받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예우 차원에서 퇴직자를 만나거나 대접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친목 모임에 직무 관련 퇴직자가 포함됐더라도 사회상규상의 만남이라면 사전·사후 신고만 잘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국·과장들은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소리냐”며 불만을 표시한다.

직무와 관련한 퇴직 공무원들과 친목 차원에서 만나는 기회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면 된다지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누가 신고까지 하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할지는 의문이다.

이 행동강령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키우는 공무원들도 있다.

친목 모임조차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인간 관계, 선후배 관계를 이에 끊어버리라는 행동강령이 아닌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인간과 교감하는 감성 로봇까지 만드는 시대에 공무원은 감성을 배제하고 살라는 말과 진배없다는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퇴직 선배 접촉 제한이 비리와의 부정을 근절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조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資 財 子
父 父 子
事 父 子
君 父 子

資父事君

▷ 뜻: 아버지를 자료(資料)로 하여 임금을 섬길지니, 아버지 섬기는 효도(孝道)로 임금을 섬겨야 함.

기고

박대희 화순소방서 화순센터장



생명의 문을 밝히는 유도등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가 차단되고 유독가스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순간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도등이다.

유도등이란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정전이 되면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유도등 종류에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

도등, 객석 유도등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 부착되는 장소와 적용 등이 달라진다.

첫째, 피난구 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하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에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며, 그 이외엔 국가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둘째,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며,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하고 통로유도등에는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이 있다.

복도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며 피난구의 방향이 명시되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이 명시되는 통로유도등을 말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유흥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유도등에도 종류가 많고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가 다름에도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빌딩에 설치된 유도등을 보면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화재시 인명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올바른 유도등 사용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안내하는 유도등을 찾아 대피하여 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하자.

기고

박대희 화순소방서 화순센터장



생명의 문을 밝히는 유도등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가 차단되고 유독가스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순간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도등이다.

유도등이란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정전이 되면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유도등 종류에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

도등, 객석 유도등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 부착되는 장소와 적용 등이 달라진다.

첫째, 피난구 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하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에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며, 그 이외엔 국가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둘째,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며,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하고 통로유도등에는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이 있다.

복도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며 피난구의 방향이 명시되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이 명시되는 통로유도등을 말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유흥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유도등에도 종류가 많고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가 다름에도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빌딩에 설치된 유도등을 보면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화재시 인명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올바른 유도등 사용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안내하는 유도등을 찾아 대피하여 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하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겸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